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1246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나205260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124649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개명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김유주

변론종결 2023. 9. 12.

판결선고 2023. 10. 31.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17. 7. 6.자 40,000,000원의, 2017. 7. 14.자 2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주식회사 C 또는 D와 피고 사이의 2017. 7. 6.자 50,000,000원의, 2017. 7. 14.자 2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2021. 12. 1.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원장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채권기관
1	E	450,000,000원	2016-03-24	2018-03-23	기업은행
2	F	648,000,000원	2016-04-12	2018-04-11	기업은행
3	G	342,000,000원	2016-04-19	2018-04-18	기업은행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8. 1. 24.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8. 4. 5. 기업은행에게 합계 1,454,486,365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D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 8063호로 “D 및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4,625,447원 및 그중 1,454,314,720원에 대하여는 2018. 4. 5.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소외 D의 배우자로서, 2017. 7. 6. 소외 H와 서울 성북구 I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53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480,000,000원은 2017. 7. 1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당일 매도인 H에게 계약금으로 자기앞수표 40,0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H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보증금 25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H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 250,000,000원과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500,000원(= 매매대금 53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 전세보증금 250,000,000원 - 기존 임대차보증금 14,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임차인에게 그의 임대차보증금 14,5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7. 6.경 소외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소외 회사 또는 D는 피고에게 위 매수대금으로 2017. 7. 6. 50,000,000원과 2017. 7. 14. 23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 50,000,000원 + 230,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채무자 소외 회사 또는 D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모두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소외 회사 또는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원고가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소외 회사가 이자연체를 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되었는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증여계약의 존부(사해행위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은행, K은행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7. 7. 6. 40,000,000원, 같은 달 14. 210,000,000원(= 60,000,000원¹) + 1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피고는 L생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 2015. 2. 18.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인바, 이 사건 증여 당시 만 23세의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으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하면서 월 1,87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M는 D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의 일부로 지급한 100,000,000원과 관련하여, ① 소외 회사는 2017. 6. 29. 피고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H에게 이 계좌에서 2017. 7. 6. 4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매매계약금 지급하였고, 2017. 7. 13. 8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2017. 7. 14.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의 입금시점과 이를 출금하여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시점이 매우 근접한 점, ②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M가 위 금원을 현금을 차용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직전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계약금 및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위 금원의 입금과 관련하여, 2017. 5. 17. 소외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2,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5. 17. 피고가 소외 회사에 1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㉓ 피고는 당초 본인의 자금 15,800,000원과 2015. 9. 21.부터 2017. 3. 30.까지 M로부터 현금 96,000,000원을 포함하여 차용한 260,500,000원과 253,7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거듭하여 주장하였을 뿐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매수대금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 ㉔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매수대금은 매매계약일과 근접한 2017. 6. 29.경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체한 100,000,000원을 피고가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잔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던 점, ㉕ 피고는 이 법정에서 2017.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K은행 계좌 내역을 임의로 제출하면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받은 월급 거래내역만이 있을 뿐 거래내역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2023. 2.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갑 제6호증)을 기초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100,000,000원이 넘는

금액의 이체가 있다고 주장하자, 비로소 2023. 3. 31.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펴기 시작하였던 점, ㉔ 피고는 1993년생으로 당시 만 23세의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으로서 소외 회사에서 월 1,87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수대금 중 자신이 보유한 자금은 15,8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60,500,000원은 M로부터, 253,700,000원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인바(2022. 8. 23.자 답변서), 피고의 위 주장은 종전의 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고가 그 주장처럼 100,000,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숨기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㉕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입금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계약금 및 잔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돈 중 1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증여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매수대금 중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① 소외 회사는 2017. 6. 29. 그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M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310,75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 8,500,000원 + 100,000,000원 + 2,250,000원)을 송금하였고, M는 2017. 7. 5. 위 금원 중 3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M의 다른 통장인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한 점, ② M는 2017. 7. 14. 이중 1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가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달 21. 그중 14,5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M는 2017. 7. 31.경 나머지 140,000,000원을 다시 소외 회사에게 다시 송금하고 있는 점, ③ 이외에도 소외 회사는 M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2017. 8. 11. 142,1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달 14. O으로부터 71,200,000원이 입금되어 잔고가 220,730,256원이 되었는데, 같은 날 소외 회사가 5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소외 회사가 같은 달 18. 50,000,000원 및 750,000원을 입금하여 잔고가 221,480,256원이 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같은 해 9. 29. 위 금원 중 210,000,000원을 출금하는 등 소외 회사나 제3자가 입금한 돈을 자기앞수표로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소외 회사가 출금하는 구조를 띄고 있는데, M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여동생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위 M의 위 계좌는 사실상 소외 회사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M의 계좌 2개를 거친 이후 피고에게 송금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을 뿐 사실상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 잔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외 회사의 무자력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구상금채무를 포함하여 2,494,269,000원, 조세채무로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증여일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사해행위 인정 여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7. 7. 6.자 40,000,000원 및 같은 달 14.자 210,000,000원(= 같은 달 13. 발행되어 같은 달 14. 지급된 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중 60,000,000원 + 1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은 이를 각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을 지급받은 날²⁾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증여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외 D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소외 회사가 아니라면,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증여하였다는 전제에서, D로부터 이 사건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1) 소외 회사가 피고의 계좌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이 매수계약금 40,000,000원과 매매대금 잔대금의 일부로 사용된 이상 비록 피고가 2017. 7. 13. 매매대금 잔대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 모두를 소외 회사가 증여한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돈도 모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는 전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